

수원지방법원 2023. 2. 16 선고 2021가단559384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기술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로텍 담당변호사 김윤석

피 고 1. A

2. B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에셀 담당변호사 배정호

변 론 종 결 2022. 12. 8.

판 결 선 고 2023. 2. 16.

주 문

1. 피고들과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20. 8. 28. 체결된 증여계약을 111,869,035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11,869,035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신용보증약정의 체결 등

1) 원고는 2017. 8. 16. 'D회사'의 대표자인 C와 사이에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보증원금 100,000,000원, 보증기한 2018. 8. 26.(이하 2018. 8. 13.로 변경)으로 하는 신용보증서를 발급하였다(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

2) C은 2017. 8. 17.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중소기업자금대출을 받으며 위 신용보증서를 제출하였다. 이후 C은 이 사건 대출금 채무의 대출기한을 2018. 8. 26., 2020. 8. 14., 2021. 8. 13.으로 순차로 연장하였다가 2021. 4. 19.자 이자연체를 원인으로 하여 2021. 6. 1.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이하 '이 사건 대출약정'이라 한다).

3) 원고는 2021. 9. 10. 중소기업은행에 101,183,167원(대출원금 100,000,000원 + 대출이자 1,183,167원)을 대위변제하였고, 이로 인하여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발생한 비용은 미수 추가보증료 110,950원, 법적절차비용 506,500원이며, 이 사건 대출약정에 따라 2020. 6. 1. 이후 적용되는 손해금율은 연 8%이다.

나.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 등

1) C은 2020. 8. 28. 피고들과 사이에 별지 목록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들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각 1/2 지분을 증여하는 내용의 증여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 2020. 9. 3.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증여계약을 원인으로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 접수 제205423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각 공유지분 1/2, 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

2) 이 사건 부동산에는 2016. 11. 3. 채무자 C,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E, 채권최고액 192,000,000원으로 정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는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2020. 11. 12. 위 근저당권은 해지, 말소되었고, 같은 날 채권최고액 157,300,000원, 채무자 피고 B,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E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

3)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은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당시는 240,000,000원,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는 380,000,00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하기 전에 발생한 것이어야 하지만, 그 법률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성립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발생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00. 6. 27. 선고 2000다17346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 즉, 원고는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이전에 이미 C과 사이에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C은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을 기초로 금융기관으로부터 이 사건 대출약정에 따른 대출을 받은 점, C은 이 사건 대출약정에 따른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고 계속하여 대출기한을 연체하였을 뿐만 아니라 결국 2021. 4.경 이자의 지급을 연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점, 그 이후 원고가 2021. 8.경 금융기관에 대하여 대위변제를 함으로써 실제로 구상금채권이

발생하기도 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당시 이미 채권발생의 기초가 되는 이 사건 대출약정 및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 체결되어 있었던 이상, 원고의 C에 대한 구상금채권인 합계 101,800,617원(= 대위변제원금 101,183,167원 + 미수추가보증료 110,950원 + 법적절차비용 506,500원)은 이 사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에 해당한다.

나. 채무초과 상태 해당 여부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당시 C이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는지에 관하여 본다.

이 법원의 법원행정처에 대한 사실조회회신결과, 화성시청에 대한 2022. 8. 10.자, 2022. 10. 17.자 각 사실조회회신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C은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당시 시가 240,000,000원 상당의 이 사건 부동산, 시가 약 22,988,610원 상당의 2014년식 쉐보레 익스프레스 승용차(자동차등록번호: (차량번호 1 생략)), 시가 약 3,530,930원 상당의 2010년식 쏘나타 승용차(자동차등록번호 (차량번호 2 생략))을 합한 266,519,540원을 적극재산으로 보유하고 있었고, 원고에 대한 101,800,617원 상당의 이 사건 구상금 채무, F회사에 대한 26,965,976원 상당의 채무, E에 대한 9,850,916원 상당의 채무, 144,356,125원 상당의 이 사건 근저당권의 실제 피담보채무를 합한 282,973,634원 상당의 채무를 소극재산으로 각 부담하고 있었다(피고들은 위 각 차량의 중고가액이 합계 70,000,000원에 이른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할 뿐만 아니라, 설령 위 각 차량의 중고가액이 합계 70,000,000원에 이른다고 하더라도 C이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함으로써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는 채무초과 상태를 초래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결론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위와 같은 인정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및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C은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C이 운영하고 있던 사업체(D회사)의 경우 2020년경 합계 600,000,000원 이상의 매출액이 발생하였고, C이 2020년경 급여로 합계 63,700,000원을 수령하였을 뿐만 아니라 월 10,000,000원 이상의 급여를 수령하였으므로, C은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채무초과 상태에 있지

아니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살핀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2020년경 D회사에 일정액의 매출액이 발생하였다는 것만으로 C이 같은 금액 상당의 수익을 얻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할 뿐만 아니라 위 업체에 대한 자력상황이 좋지 아니하여 이 사건 대위변제금 채권이 발생하게 된 점, ② C이 2020년경 주식회사 G로부터 합계 63,700,000원 상당의 급여를 수령하는 등 일정 금액의 급여를 수령하였다고 하더라도 2020. 8.경 그 예금계좌 잔액이 거의 남아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를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적극재산으로 보유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C은 원고에 대한 채무 이외에도 기업은행 및 F회사 등 금융기관에 대한 대출금 채무를 연체하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앞서 본 바와 같이 C은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에 어긋나는 피고들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 사해행위

1) 사해행위에 있어서 채무자의 법률행위가 채권자를 해한다는 것은 채무자의 총재산에 감소를 초래하는 것, 즉 채무자의 재산 처분행위에 의하여 그 재산이 감소되어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됨으로써 채권자의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7다63102 판결 등 참조). 또한 사해의사란 공동담보 부족에 의하여 채권자가 채권변제를 받기 어렵게 될 위험이 생긴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이며, 이러한 인식은 일반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있으면 족하고, 특정의 채권자를 해한다는 인식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8. 5. 12. 선고 97다57320 판결 등 참조). 한편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재산을 타인에게 증여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행위는 사해행위가 된다(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5다2868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C은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적극재산이 소극재산을 초과하는 무자력 상태에 있었던 C이 피고들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데,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던 C이 이 사건 증여계약을 통해 적극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피고들에게 이전한 행위는 채권자의 공동담보가 되는 책임재산을 감소시켜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게 하는 행위로서 원고를 비롯한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가 되고, 이 경우 채무자인 피고들의 사해의사는 추정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는 수익자인 피고들을 상대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고 그 원상회복을 구할 수 있다(설령 C이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당시 채무초과 상태에 있지 아니하였다거나, 피고들이 이 사건 부동산의 근저당권부 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였다고 하더라도 C이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들에게 증여함으로써 그 책임재산이 감소되어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피고 A가 이 사건 부동산을 종전 소유자인 H로부터 매수하면서 단지 그 소유권이전등기만을 C 명의로 마쳐준 것이어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는 명의신탁에 기한 것으로 무효이므로, 이 사건 부동산은 처음부터 C의 책임재산이 될 수 없고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부동산에 관하여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본문이 적용되어 명의수탁자인 채무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무효인 경우에는 그 부동산은 채무자의 소유가 아니기 때문에 이를 채무자의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공하여지는 책임재산이라고 볼 수 없고, 채무자가 위 부동산에 관하여 제3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고 하더라도 그로써 채무자의 책임재산에 감소를 초래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를 들어 채무자의 일반 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라고 할 수 없으며,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대법원 2000. 3. 10. 선고 99다55069 판결, 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5다54104 판결 등 참조).

그러나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가 이른바 계약명의신탁 약정을 맺고 명의수탁자가 당사자가 되어 명의신탁 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소유자와 사이에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그 매매계약에 따라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명의수탁자 명의로 마친 경우에는,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 사이의 명의신탁 약정의 무효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그 명의수탁자는 당해 부동산의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고, 다만 명의신탁자에 대하여 그로부터 제공받은 매수자금 상당액의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하게 되는바, 위와 같은 경우에 명의수탁자가 취득한 부동산은 채무자인 명의수탁자의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제공되는 책임재산이 되고, 명의신탁자는 명의수탁자에 대한 관계에서 금전채권자 중 한

명에 지나지 않으므로, 명의수탁자의 재산이 채무의 전부를 변제하기에 부족한 경우 명의수탁자가 위 부동산을 명의신탁자 또는 그가 지정하는 자에게 양도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것으로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된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7다74874 판결 참조).

살피건대,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C과 피고 A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명의신탁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설령 피고들 주장과 같이 C과 피고 A 사이에 명의신탁 약정이 있었다고 보더라도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C은 2011. 8. 11. I 주식회사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였는바, 이는 일종의 계약 명의신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이와 같이 C이 계약명의신탁의 수탁자에 해당한다는 사정을 I 주식회사가 알았다고 볼 만한 다른 사정이 없는 점 등에 더하여 앞서 살핀 법리를 비추어 보면,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 부동산은 계약명의신탁의 수탁자인 C의 소유에 속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에 어긋나는 피고들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라. 피고들의 선의 항변에 관한 판단

1) 피고들 주장

피고들은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이전에는 C이 무자력 상태에 있다거나 원고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하여 전혀 알지 못하였으므로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한다고 항변한다.

2) 판단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로서는 자신의 책임을 면하려면 자신의 선의를 증명할 책임이 있는데, 이 경우 수익자의 선의 여부는 채무자와 수익자의 관계,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처분행위의 내용과 그에 이르게 된 경위 또는 동기, 그 처분행위의 거래조건이 정상적이고 이를 의심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며 정상적인 거래관계임을 뒷받침할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지 여부, 그 처분행위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적, 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7다74621 판결 등 참조). 채무자의 제3자에 대한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할 경우에,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하는 데에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고, 채무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 잡아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안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다5710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악의의 추정을 뒤집고 피고들이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당시 위 증여계약이 C의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하여 선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마.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의 범위

사해행위로 저당부동산이 양도된 후 변제 등에 의하여 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경우에, 그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잔액의 한도에서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그 가액의 상환을 구할 수 있을 뿐이다(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다6391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이 사건 부동산의 책임재산가액이 380,000,000원인 점, 원고의 피보전채권액은 이 사건 소 제기 무렵 대위변제원리금 합계 101,800,617원이 발생한 점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그중 대위변제 원금 101,183,167원에 대하여 2021. 9. 11.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일인 2022. 12. 8.까지 454일간 앞서 본 약정이율인 연 8%의 비율로 계산한 돈이 10,068,418원($= 101,183,167\text{원} \times \text{연 } 8\% \times 454\text{일}/365\text{일}$, 원 미만 버림)임이 계산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원고의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의 피보전채권액인 111,869,035원($= 101,800,617\text{원} + 10,068,418\text{원}$)과 책임재산가액 235,643,875원($= 380,000,000\text{원} - \text{이 사건 부동산의 실제 피담보채무액 } 144,356,125\text{원}$)에서 각 공유지분에 따른 책임재산가액 117,821,937원($= 235,643,875\text{원} \times \text{각 공유지분 } 1/2$) 중 낮은 금액의 한도 즉, 111,869,035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11,869,035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에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현정

별 지

부 동 산 목 록

(1동의 건물의 표시)

경기도 화성시 동[도로명주소] 경기도 화성시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10층 아파트

1층 472.964㎡, 2층 내지 10층 각 462.488㎡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건물번호 :

건물내역 : 철근콘크리트구조 84.956㎡

(대지권의 표시)

토지의 표시 : 경기도 화성시 대 39110.2㎡

대지권종류 : 소유권대지권

대지권비율 : 39110.2 분의 70.6491 끝.

